

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326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2월 24일
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안 제24조의2에서 협의체 구축과 협의체 업무에 관한 사항이 병렬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등 조문 체계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일부 조문의 내용과 체계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 골자

- 안24조의2(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)를 조문 체계에 맞게 수정함.

3. 참고사항: 생략

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4조의2(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) ① 시장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지역 도시 정부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네트워크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축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사업의 추진
2. 도시정부의 대기질 개선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적 교류 프로그램 기획·운영
3.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활동하는 국제기구 및 연구소 등의 유치 및 지원
4.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및 협의회 회의 개최·지원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회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사무국을 설립·운영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24조의2(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) ① 시장은 대기 오염 등으로부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환경보전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으며, 관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효과적인 대기질 개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지역 도시정부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네트워크(이하 "협약체"라 한다)의 구축 2.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사업의 추진 3. 도시정부의 대기질 개선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적교류 프로그램 기획·운영 4. 협약체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사무국 설립과 지원 5.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	<p>제24조의2(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) ① 시장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지역 도시정부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네트워크(이하 "협약체"라 한다)를 구축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사업의 추진 2. 도시정부의 대기질 개선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적교류 프로그램 기획·운영 3.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활동하는 국제기구 및 연구소 등의 유치 및 지원 4.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및 협약체 회의 개최·지원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

활동하는 국제기구 및 연구소 등의 유치 및 지원

6.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및 협의체 회의 개최·지원

7. 그 밖에 대기질 개선 등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

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협의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.

하다고 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협의체 사무국을 설립·운영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의2를 제24조의3으로 하고,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) ① 시장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지역 도시 정부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네트워크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축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사업의 추진
2. 도시정부의 대기질 개선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적 교류 프로그램 기획·운영
3.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활동하는 국제기구 및 연구소 등의 유치 및 지원
4.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및 협의회 회의 개최·지원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사무국을 설립·운영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〈신 설〉</u></p>	<p><u>제24조의2(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) ①</u> <u>시장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</u> <u>에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전하기</u> <u>위하여 동아시아 지역 도시정부가 참여하는 동</u> <u>아시아 맑은공기 도시네트워크(이하 "협약체</u> <u>라 한다)를 구축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의</u> <u>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및</u> <u>사업의 추진</u> <u>2. 도시정부의 대기질 개선 정책 역량</u> <u>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적교류</u> <u>프로그램 기획·운영</u> <u>3.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활동하는 국제</u> <u>기구 및 연구소 등의 유치 및 지원</u> <u>4.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및 협약체 회의</u> <u>개최·지원</u> <u>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</u> <u>사항</u> <p><u>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체의 원활한</u> <u>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협약체 사무국을 설립·</u> <u>운영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</u> <u>지원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24조의2 (생 략)</p>	<p>제24조의3 (현행 제24조의2와 같음)</p>